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9일 11시 06분



# 목차

목차	2
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	3
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	3
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	3
한부모가족 선정기준	3
가구원수별 선정기준	3
지원내용	3
아동교육지원비(중·고등학생 학용품비)	3
아동양육비 지원	4
추가 아동양육비 지원	4
생활지원금 지원	4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	4
검정고시 등 학습지원	4
자립지원촉진수당	4

여성 단체현황	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	여성복지시설	여성문화회관수강생모집 ㄱ
여성문화회관시설사용	여성안심택배함	여성안심지킴이집	여성추천사이트

##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

### 📌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

다음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“모(☑) 또는 부(☑)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3%이하인 2024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
-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
  -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  - 미혼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)
  -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
  -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
  - 배우자의 군복무,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- ※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

### 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

- 근거
  - ›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
  - ›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

### 가구원수별 선정기준

(단위 : 원/월)

구분		2인	3인	4인	5인	6인
2024년 기준 중위소득	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
한부모 및 조손가족	기준 중위 소득 63%	2,320,044	2,970,234	3,609,845	4,218,313	4,799,572
	기준 중위 소득 65%	2,393,696	3,064,527	3,724,443	4,352,228	4,951,940
청소년 한부모 가족	기준 중위 소득 65%	2,393,696	3,064,527	3,724,443	4,352,228	4,951,940
	기준 중위 소득 72%	2,651,478	3,394,553	4,125,537	4,820,929	5,485,226

### 📌 지원내용

아동교육지원비(중.고등학생 학용품비)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지원대상가구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지원대상아동 :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- 지원내용 :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.3만원 / 연 1회

## 아동양육비 지원

- 지원대상 :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미만의 아동
- 지원제외대상 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수당을 받는 경우

##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
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월 5만원
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월 10만원
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~18세 미만 아동, 월 5만원

## 생활지원금 지원

- 지원대상 : 18세 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가족
- 지원내용 :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 한부모 세대 월 5만원 /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월 7만원

##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
- 아동양육비
  - ›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대상 월 35만원(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, 14만원 지급)
  - ›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대상 월 40만원(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, 19만원 지급)

##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

-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
  - › 청소년한부모가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,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
  - › 고교생 교육비 :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

## 자립지원촉진수당

-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, 월 10만원



# 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